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8. 2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5년 8월 14일

나. 발의자: 김지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5년 8월 21일

라. 상정일자: 제26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8. 2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김지연 의원)

가. 제안이유

-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체육 인프라의 확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신규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영등포구 내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제4조)
-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 사용내역 보고 및 현장검사 규정 (안 제6조)
- 협약 체결 및 이용자 의무사항 명시 (안 제7조~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2024년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국민생활체육조사 결과 생활 체육 참여율은 최근 3년 동안 6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체육시설 이용률을 살펴보면 공공체육시설은 33.7%, 민간체육시설은 20.1%, 기타체육시설은 7%이며 학교 체육시설은 6.2%에 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주민들의 건강, 체력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는 추세이나 공공체육시설의 건립은 예산 및 부지 제약 등의 사유로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기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학교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공공자원 활용도를 높여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생활 체육 활성화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본 조례안이 발의됨.

○ 주요 내용으로

- 동 조례안은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지원계획, 지원사업, 협약 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아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음.

○ 검토 결과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와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체육 및 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육성 및 시책 추진 의무를 가지며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서는 이를 위한 예산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 공공체육시설 확충의 어려움을 보완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2025년 5월 학교알리미 공시자료 기준, 우리 구(區)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31곳, 체육관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14곳, 강당을 개방하고 있는 학교는 5곳임. 다음과 같이 이미 조성된 인프라를 활용하여 주민 생활권 근거리에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활 체육 참여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개방한 학교에 지원가능한 사업을 명문화한 것은 추후 학교 체육시설의 지역사회 개방 유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시설의 유지보수나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안 제5조)이 단발성 설치 지원에 그치지 않기 위하여 사용내역 보고(안 제6조) 및 협약 체결(안 제7조) 규정을 둔 것은 지속적 유지관리 및 안정적 지원 체계 마련을 도모한 것으로 여겨짐.
- 다만,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시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부서에서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김지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69
------------	-----

발의연월일: 2025. 8.

발 의 자: 김지연·임현호·전승관
정선희 의원 (4인)

1. 제안이유

- 가.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활용 가능한 체육 인프라의 확보가 강하게 요구되고 있음.
- 나. 그러나 공공체육시설의 절대적 부족과 신규 시설 확충의 어려움으로 인해, 기존 자원을 활용하는 대안으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내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이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시행 (안 제3조~제4조)

- 다.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안 제5조)
- 라. 사용내역 보고 및 현장검사 규정 (안 제6조)
- 마. 협약 체결 및 이용자 의무사항 명시 (안 제7조~제8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 등
- 나. 예산조치: 협의필요
- 다. 입법예고: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및 「생활체육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과 체력의 증진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체육시설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경우,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
2. “학교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중 학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영등포구 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목적
2.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 대상 범위

3.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세부 실행계획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을 구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의 안정적인 개방 환경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 및 유지보수 지원사업

2. 학교체육시설 개방에 따른 관리인력 지원사업

3. CCTV 설치 등 학교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4.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6조(보고 및 검사) ① 학교체육시설 개방 활성화와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은 학교는 사용내역이 기재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서류와 장부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시설 개방 현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학교에 출입하여 시설 개방 현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검사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 ①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협

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협약서에는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시간, 상호협력, 그 밖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이용자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시설 사용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이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는 학교체육시설 이용 종료시 이용 전의 상태로 반환해야 한다.

③ 이용자의 고의나 과실 등으로 사고 또는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학교체육시설 이용자는 학교의 세부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학교체육시설의 개방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학교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